

#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2,294,520	9,068,836
일반회계	283,570,618	8,507,119
특별회계	18,723,902	561,717
기타특별회계	18,723,902	561,717
상수도특별회계	7,899,375	236,981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936,662	28,1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01,344	27,04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043,000	121,290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284,768	128,543
주택사업특별회계	2,450	7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28,035	12,841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228,268	6,84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6억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49,91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